

#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995년 10월 9일

총무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9월 27일 삼척시장 제출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9월 27일
- 다. 심사일자 : 제8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('95.10.9) 심사 의결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담당관 홍의웅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제14703호)에 따라, 종전 조례 규칙의 심의나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,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할 때는,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 처리하던 것을,
- 개정조례안에 시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처리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명문화 시키므로써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삭제하기 위함.

#### 나. 개정조례안 주요골자

-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중요한 조례·규칙·훈령의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 (안 제3조)

## 다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 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중요한 조례·규칙·훈령의 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(생략)</li> <li>6. (생략)</li> <li>7. (생략)</li> </ol>	<p>제3조( 결정사항) 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<u>〈 삭 제 〉</u></li> <li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li> <li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li> <li>6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li> </ol>

## 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: 홍성용)

종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던 것을,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조례·규칙심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한다는 것은, 조례·규칙등 자치입법사항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삼척시장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삼척시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라고 해야 하는데, 어떻게 생각하는지 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고,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삭제 조치하였음.</li></ul>

## V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 (임동순위원)

-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조례·규칙을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므로써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생각되어 찬성함.

### 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 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 VII. 심사결과 :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## VI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.